

대법원 2022. 6. 16 선고 2022다2160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6. 16 선고 2022다216008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나204510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 선고 2020가합519012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미합중국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

담당변호사 배진수, 권택신, 김상훈, 김재용

피고, 피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

담당변호사 박상현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5101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2. 6. 16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